

“평생 함께 살았어도 가구만 부부 ‘공동명의’ 예요”

혼인 전 과수원을 소유했던 남편이 개각대금으로 제1부동산을 구입했고, 아내는 요리보조사로 일하며 봉급을 받아 왕방수익으로 제2부동산을 구입했다. 남편은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무직으로 지냈고, 아내는 제1부동산에 거주하며 그 집 수리비용을 부담하고 임대하는 등 관리수익을 담당하고 다방을 경영하기도 했다. 아내가 거의 독자적으로 부동산 가치유지와 감소방지에 노력해왔음을 인정해, 제1부동산에 대해 기여도 0%를 인정한다(서울가정법원 91년 11월 21일).

아내는 가사에 종사하며 남편을 뒷바라지했고, 남편은 건물 신축시 자금 일부를 아내의 친정오빠로부터 차용해 완공하고 후에 이를 갚았다. 이때 건물형성에 대한 아내의 기여행위가 가사전담의 뒷바라지에 불과하고 별다른 경제적 활동이 없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원심이 재산분할로 남편이 아내에게 건물 2분의 1 지분의 이전을 명한 것은 과다하므로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대법원 94년 12월 2일).

최근 할머니들의 이혼소송이 잇따라 배소를 거듭하면서 여성노인 인권문제를 보는 사법부의 시각이 사법부의 인권지수를 제는 ‘잣대’로 인식돼가고 있다. 이혼패소 원인에 관련된 여러 논의들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결국 ‘돈’ 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 바꿔말하면,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해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펴낸 〈부부재산관계에 나타난 여성노동의 기여도 평가에 관한 연구〉(연구자 장영아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부부관계에서의 재산분할제도는 90년 가족법개정 때 신설돼 91년부터 시행됐기에 연구서는 91-97년에 걸쳐 하급심

법의 잣대로 본 ‘부부재산관계’



▲ 대부분의 이혼소송 판례들은 여성의 가사노동에 거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젠 가족법상 재산분할제도와 기여분제도가 ‘형식적 평등’에 그치면 안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과 대법원 판례중 여성노동 기여도를 비교적 ‘분명히’ 명시한 판례들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연구자는 판례를 통해 법정부부재산제를 별산제로 해석·적용해 여성은 가사노동만으로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며 금전적 대가를 제공한 경우에만 그 기여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결론내린다. 그래서 이혼시 재산분할제도와 배우자 사망시 상속제도의 운영이 기여분 인정에 핵심적이긴 하지만, 여러 정황상 이 역시 여성노동 기여분 보장엔 미흡하다. 연구자는 판례에 의거, 여성의 노동상황에 관계없이 부부재산의 형성·유지·증식에 대한 여성의 기여도 평가는 3분의 1 이상이 가장 많지만 2분의 1 이상을 넘지않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한다. 연구자는 이런 판례 태도에 대해 “가사노동이 재산귀속과 무관한 우리

나라의 별산제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입법화한 ‘혼인중 부부공동재산의 잠재적 공유지분의 분할’이라는 재산분할제도의 기능을 적절히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한다. 연구자가 세분화한 여성노동 기여도 관련 재판부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노동 기여도가 3분의 1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분할대상 재산이 남편의 원 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것일 경우가 많다. 이는 별 재산없이 집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남편의 수입으로 재산증식을 하는 대부분의 여성에게 매우 불리하다.

둘째, 기여도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 평가 시엔 전업주부나 일하는 주부냐에 따라 여성의 노동상황을 돌로 나눈 결과다.

셋째, 기여도 2분의 1 평가 시엔 여

여성개발원이 펴낸 〈부부재산관계판례에 나타난 여성노동의 기여도 평가에 관한 연구〉서 주부 노동기여도 50% 이하로 밝혀져 가사노동보다 사회적노동 절대우위 ‘수퍼우먼’ 되지 않으면 ‘맨 몸’으로 쫓겨날 수밖에

성의 사회적 노동으로 인한 수입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을 중시했다. 이는 남편의 사회적 노동을 아내의 가사노동과 사회적 노동을 합한 것보다 우위에 둬

로써 여성의 이중노동 상황을 별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넷째, 기여도 2분의 1 초과 평가 시엔 분할대상인 공동재산이 여성의 혼인 전 재산에 기초해 형성된 경우다. 이런 상황의 여성이 극소수란 점을 감안하면, 역시 여성에게 불리한 평가다.

단, 제3자(원고-남편, 피고-아내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재산분쟁이 있을 경우 가제도구만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판단됐다(대법원 80년 8월 19일).

이같은 사법부의 ‘성별분업적’ 태도 하에서 가족법상 재산분할제도와 기여분 제도가 ‘형식적 평등’에 그치지않기 위해 연구자는 ▲부부재산계약의 활용 ▲혼인중 재산이나 이혼시 재산분할될 재산에 대해 명의인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처분했을 경우, 동의없는 처분에 대해 취소할 수 있는 제도 마련 ▲기여상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혼인중 취득 재산을 부부 공동노력의 결과물로 판단, 2분의 1 분할 지향의 판례태도 요청 ▲전업주부는 가사에만 종사했으므로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는 직업상 장애를 인정해 이혼후 부양 인정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이 은경 기자)

한국아동복지학회 ‘아동복지시설 보육사의 부모역할 훈련’ 워크숍

자녀의 ‘홀로서기’ 지원하라



▲ 이번 워크숍에선 아동들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사회기술훈련을 조기에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발표됐다.

한국아동복지학회(회장 배태순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2월 5일 이화여대에서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와 공동으로 첫 워크숍을 열었다. 주제는 ‘아동복지시설 보육사의 부모역할 훈련’.

워크숍은 이배근 한국어린이보호회 회장의 ‘보육사 공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시작으로 각각 제1·제2 주제로 나누어 ‘아동의 사회적 기능향상을 위한 사회기술훈련의 이해’(박용권)·‘아동행동의 이해와 의사소통 기법’(이영분) 발표로 진행됐다.

제1주제 발표에선 집단활동에서나 사회적 상호의존상황에서 매우 유용한 사회기술이 결핍될 경우, 아동들이 대인관계를 부정적으로 맺게돼 현실적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게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사회기술 훈련을 조기에 일관적으로도 실시할 것이 제안됐다. 단, 사회기술이 다소 부족한 아동의 경우 기술습득이 문제인지 기술수행이 문제인지를 결정해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2주제인 의사소통 기법에선 우선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평가를 피하고 행동이나 상황을 언급할 것 ▲상황이나 자녀의 행동이 부모 자신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느낌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느낌의 이유를 언급할 것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언급할 것 등이 제안됐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엔 ‘적극적 경청’이 치료책. 이때 자녀가 문제를 갖고 있다는 신호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할 때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부모 측에선 진정으로 수용의 감정을 느끼고, 자녀가 부모와 별개의 삶을 사는 별개의 인간임을 인식하고, 자녀가 결국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신뢰감을 가져야 한다. 이때 부모는 ▲단어 자체보다 말하는 방식에 주의 ▲사실과 느낌을 둘다 반영 ▲가능한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유도 ▲소극적 경청과 적극적 경청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발표자는 권고했다.

70세 할머니, 73세 남편 상대로 이혼소송 승소해 위자료 1억 판결

결혼파탄 책임자에 ‘보상의무’ 있다

지난 1월 14일 제주지법 제2 가사부 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희생과 학대로 점철된 43년 간의 결혼생활 청산을 정식 선언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70세 할머니에겐 1억원의 위자료 지급이 결정됐다. 두 부부 사이의 재산문제도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지만 이미 이혼소송 전 분할된 상태로 큰 문제는 없다. 이들은 본적이 모두 복제주군이긴 하지만,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고 취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에 판결문을 중심으로 이들의 사례를 살피본다.

일본에서 살고 있던 원고 A는 친지의 소개로 피고 B를 만나 56년부터 혼생활을 시작, 아들 하나를 낳았다. 시 A, B 모두 초혼은 아닌 상태로 B는 결혼 당시 10년 정도 폐병을 앓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B는 몸이 허약해 제력이 없었기에 A는 가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처음부터 웃수선, 해녀, 요구트 배달 등을 했다. 점원으로 일하는 비교적 손쉬운 일을 하면서 결혼 몇 년 후 건강을 회복한 B는 불고기식당을 여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A가 심수간 식당을 운영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이에 B는 사후에 한번 정

도 식당을 둘러보고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정도 밖에 기여를 안했다. A가 한국을 방문해 제주도를 다녀간 것을 계기로 79년 남편과 상의없이 3억2천7백만원의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를 계기로 남편의 폭언과 폭력이 시작됐다. 남편이 81년 이 토지에 건물을 짓자고 해서 83년까지 3층 건물을 지었는데 이 과정에서 남편이 제주도에 체류하며 젊은 여자와 외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A는 이혼을 생각하게 됐다.

남편은 이 건물로 인한 임대수입을 혼자 다 챙겼고, 임차인들과 마찰이 생기면 아내가 부동산을 사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폭력을 행사, 86년과 95년엔 병원치료까지 받을 정도였다. 88년 A는 남편 단독소유로 돼있던 이 건물을 남편, 아들과 함께 3분의 1씩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명의를 변경했다.

그러다가 96년 일본에서 남편이 A 몰래 개설한 거액의 예금계좌가 발견돼 이혼을 결심하게 됐고, 변호사를 통해 이 예금 3억5천원을 남편과 반으로 나누고 제주도의 건물 임대수입에 대해선 남편에게 부당이득이니 자신과 아들에게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남편이 앞으로는

A와 아들에게 임대수입을 균등하게 분배하겠다는 내용의 조정결정으로 일단락됐다. 그리고 A는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조정결정은 잘 이행되지 않았다. 97년 6월 A가 임대료문제를 상의하러 건물에 찾아갔을 때 그곳에 거주하던 남편은 A를 건물 밖으로 끌어내려고 실랑이를 벌이다 계단에서 넘어뜨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남편은 여기에 대해 문병을 가거나 치료비를 대주는 건 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A는 남편을 고소, 폭행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

이같은 정황을 들어 재판부는 둘 사이의 혼인관계가 96년부터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상태’라고 판단, A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덧붙여 함께 형성한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남편의 과욕이 이혼의 결정적 요인이란 판단했다. 또 A의 정신적 고통이 명백함을 들어 금전상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남편에게 있음을 명시해 위자료 1억원 지급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특기할 점은 재산형성 기여도 관련부분에 대해 “엄밀히 말하면 A의 기여가 더 크다”라고 명시한 점이다.